

5.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518호 1998. 11. 20

개 정 이 유

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 준농림지역내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

주 요 골 자

상하수도를 완비한 지역으로서 진입도로를 갖춘 경우에는 용적률을 110퍼센트까지 허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.

주택회보